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9. 4(수) 10:00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통건설국 도로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70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8. 22.
- 라. 회부일자 : 2024. 8. 22.

2. 제안이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다. 위원회 구성 및 해촉 등(안 제3조부터 제5조)
- 라. 위원장의 직무(안 제6조)
- 마. 심의·자문 요청 및 회의 등(안 제7조부터 제9조)
- 바. 소위원회 관련(안 제10조부터 제12조)
- 사. 의견 청취, 사후관리 및 수당(안 제13조부터 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조례 제정의 목적과 관련 법령을 명시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2)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안 제2조~안 제6조)

- 안 제2조 : 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을 규정함
- 안 제3조 : 구성(3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규정
- 안 제6조 :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

3) 심의·자문 요청 및 회의 등(안 제7조부터 제9조)

- 위원회 회의소집 및 심의 또는 자문 결과의 처리기간, 통보결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소위원회 관련(안 제10조부터 제12조)

-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소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구성 및 회의 소집, 심의 의결 사항을 규정함

5) 의견 청취, 사후관리 및 수당(안 제13조부터 제15조)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근거한 기술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위원회가 형식적인 자문이나 심의 기구가 되지 않도록 건설공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294호, 2024. 3. 5., 일부개정]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8.>

③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2. 8.>

④ 발주청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2020. 1. 7., 2020. 12. 8., 2021. 9. 1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 ⑥ 기술자문위원회는 제5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0. 12. 8., 2022. 9. 13.>
- ⑧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발주청 소속 직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3.>
- 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9. 4. 23., 2020. 12. 8.>
- ⑩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10분의 3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20. 12. 8., 2022. 9. 13.>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개정 2019. 4. 23., 2020. 12. 8., 2022. 9. 13.>